우정사업본부
KOREA POST

다시,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22 - 154호

# 2022년도 전남지방우정청 우정9급 우정서기보(계리)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

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(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) 및 제47조(시험의 공고)에 의거, 2022년 우정9급 우정서기보(계리)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, 서류제출 유의사항 및 면접시험 일시·장소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## 《 안내 사항 》

○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제6항 및 제25조 제6항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자가 면접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 예정 인원에 미달 된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추가 선발하는 **추가합격자 제도를 시행**합니다.

○ 필기시험 추가합격 결정 여부 및 인원은 서류 미제출자 등을 포함한 면접시험을 포기하는 수험생의 인원 및 충원 사정 등에 따라 결정합니다.

○ 따라서, 제2차 시험(면접)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합격자 서류 제출 기한 내에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**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수험생은 면접시험 포기자로 간주되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을 유념**하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6월 21일

전남지방우정청장

# 1.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성적 안내

## 가.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 및 합격선

| 모집단위 | 합격인원 | 합격자 응시번호 |
|---|---|---|
| 일반 (광주·전남) | 60명 | 134329 134357 134368 134369 134432 134443 134450<br>134462 134479 134525 134558 134588 134599 134600<br>134615 134625 134631 134648 134649 134666 134707<br>134714 134716 134737 134763 134780 134785 134788<br>134823 134825 134837 134849 134895 134950 134951<br>134978 134994 135015 135044 135073 135094 135138<br>135173 135194 135219 135274 135294 135307 135310<br>135320 135358 135370 135402 135417 135462 135476<br>135520 135577 135606 135616 |
| 일반 (신안군) | 2명 | 136515 136531 |
| 일반 (완도군) | 없음 | |
| 일반 (거문도우체국) | 없음 | |
| 일반 (낙월우체국) | 1명 | 136804 |
| 일반 (조도우체국) | 1명 | 136907 |
| 장애인 (광주·전남) | 1명 | 136312 |
| 저소득 (광주·전남) | 없음 | |

※ 모집단위별 필기시험 합격선

| 구 분 | 일반 (광주·전남) | 일반 (신안군) | 일반 (낙월우체국) | 일반 (조도우체국) | 장애인 (광주·전남)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합격선 | 62.50점 | 46.25점 | 57.50점 | 56.25점 | 53.75점 |

나. 필기시험 성적은 아래 기간 중에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(http://kpost.jinhakapply.com)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- 성적 확인 기간

| 구 분 | 기 간 |
|---|---|
| 필기시험 불합격자 | '22. 6. 21.(화) 10:00 ~'22. 12. 31.(토) |
| 필기시험 합격자 | '22. 7. 29.(금) 10:00 ~'22. 12. 31.(토) |

※ 휴대폰 문자메시지(SMS) 발송을 통한 필기시험 성적 안내는 하지 않습니다.

## 2.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

### 가. 제출 기간 및 제출처

1) 제출 기간: 2022. 6. 21.(화) ~ 2022. 6. 27.(월) 18:00까지

2) 제출 방법: 등기우편*(익일특급) 또는 직접 제출(택배, 퀵서비스 불가)

* 제출 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

○ **한 통의 등기우편에는 반드시 한 명의 서류만 동봉**하여 발송하여야 하며(여러 명의 서류 동봉 금지), 추후 서류 제출 여부로 이의가 제기될 경우에는 등기우편 발송자명의 이외에 서류 제출 여부를 입증할 방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○ 모든 제출 서류는 **우측 상단에 응시번호 및 전화번호**(휴대폰, 직장 및 자택 등)를 **기재하여 제출**하시기 바랍니다.

○ 필기시험 합격자 중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, 본인의 우편물이 정상적으로 도착했는지 여부가 궁금하신 경우에는「인터넷우체국」에서 등기접수번호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**인터넷우체국**(http://www.epost.go.kr)에 접속 후【배송조회】에서 등기번호(13자리)를 입력하여 확인하거나, 우체국 콜센터(1588-1300)로 문의하여 확인 가능

※ **단기간에 서류가 폭주하므로 이메일, 전화 또는 우정청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문의하시더라도 서류의 도착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** 바랍니다.

3) 제출처: **전남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**

| 지역 | 우정청 | 주소 | 전화/팩스 |
|---|---|---|---|
| 광주·전남 | 전남지방우정청 |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<br>전남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<br>(우)61945 | 전화) 062-600-4733<br>팩스) 0505-005-1827 |

※ 제출 서류를 넣은 우편(서류)봉투 겉면에 「**우정9급 우정서기보(계리)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 재중**」 문구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나. 제출 서류

### 1) 주민등록초본 1통(필기 합격자 전원)

-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변동사항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.

※ 합격자는 주민등록초본에 시험공고일(2022. 2. 23.) 현재, 응시한 전남지방우정청 관할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.

### 2) 취업지원대상자 등 증명서 1통(해당 합격자에 한함)
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, 「5·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및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, 의상자 본인 및 가족 등 취업지원 특전을 받는 자는 국가보훈처 등에서 발행하는 **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(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) 관련서류를 제출**하여야 합니다.

### 3) 장애인 증명서 사본 1통(해당 합격자에 한함)

-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

(가)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발행하는 「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」 사본 1통(앞면과 뒷면 모두 복사)

(나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「국가유공자증」 사본 1통(앞면과 뒷면 모두 복사)

4) 저소득층 확인 서류 각 1통(해당 합격자에 한함)
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: 수급자증명서(수급기간 명시), 사회보장급여통지서 각 1통

○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: 한부모가족증명서(지원기간 명시), 사회보장급여통지서 각 1통

※ 군복무(현역, 대체복무)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한 중단 사유가 있을 경우 추가 증빙서류(군복무: 주민등록초본 / 교환학생: 학교 발급 서류(교환학생으로 해외 체류한 기간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)) 첨부

### 다. 기타 유의사항

○ **필기시험 합격자는 반드시 지정 기일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**하시기 바랍니다. 만약, 제출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 포기자(불응시)로 간주되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, 또한 제출한 서류에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증빙서류에는 발행기관의 관인 또는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유효하며, 증빙서류 우측 상단에 응시번호와 연락처(휴대전화)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 3.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안내

### 가. 시험 일시: 2022. 7. 23.(토) / 08:00~18:00

### 나. 시험 장소

| 기관명 | 시험 장소 | 비고 |
|---|---|---|
| 전남지방우정청 | 전남지방우정청 회의실 | 광주 서구 소재 |

※ **개인별 세부 면접 일정(오전/오후 응시대상자 구분)은 2022. 7. 12.(화)에 전남지방우정청 홈페이지(https://www.koreapost.go.kr/jn)와 인터넷 원서접수 시스템(http://kpost.jinhakapply.com)에 공고합니다.**

## 4. 응시자 주의사항

가. 모든 응시자는 지정된 시험일시·시험장에서만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
※ 오전 응시자가 오후에, 오후 응시자가 오전에 응시할 수 없음

나. 안전한 시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, 손소독 및 발열검사 등 시험 당일 진행되는 안전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응시자는 면접장내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, 면접도 응시자와 면접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정거리(2m내외)를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
- **코로나19 확진자의 면접시험 진행 절차는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.**

○ 2022. 7. 12.(화)의 **추가 공고**에서 **개인별 면접 일정**(오전/오후 구분에 유의)과 **시험 장소를 반드시 확인**하고 **응시표·주민등록증**(또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,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), **필기구(검정볼펜)를 지참**하여 지정된 일시에 해당 면접시험장(응시자대기장)으로 출석하여야 합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준수사항은 2022. 7. 12.(화)의 추가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## 5.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신청안내

○ 면접시험 응시에 편의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등 응시자는 붙임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편의제공 신청내용과 사유를 2022. 6. 24.(금)까지 우정청별 담당자 전자메일(teresa0522@korea.kr)로 송부하여야 합니다.

- **신청 대상**: ①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②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된 자로서 **시각·지체·뇌병변**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

**※ 편의제공 문의: 전남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 ☎ (062)600-4733**

○ 편의제공 내용 중 **면접과제 작성시간 1.2배 연장**은 **종합병원 의사진단서** 내용을 기준으로 제공여부를 결정하므로 진단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

- 의사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에서 면접시험일 기준 2년 이내 발급(2020.7.22. 이후 발급)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합니다.

## 6.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발표

○ 면접시험 포기 등에 따라 면접시험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필기시험 추가합격자를 결정·공고할 예정이며,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명단은 2022. 7. 12.(화) 전남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.

※ 다만, 필기시험 합격자 중 면접시험 포기자가 적어 법령에 의한 추가합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충원 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합격을 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## 7. 최종합격자 발표

**가. 발표 일자**: 2022. 7. 29.(금) 10:00 ~

나. 전남지방우정청 홈페이지(http://www.koreapost.go.kr/jn)와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(http://kpost.jinhakapply.com)에 게시하며, 휴대폰 문자메시지(SMS)를 통해서도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.

【붙임 1】

#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

| 장애유형 | | 편의제공 내용 |
|---|---|---|
| 지체장애 | 상지 | · 면접과제 작성시간 1.2배 연장(의사진단서 필요)<br>※ **의사진단서 필수 기재사항**<br>① 상지 지체장애로 인한 필기능력 장애의 정도<br>* 상이등급자의 경우 의사진단서에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기재<br>② 신청한 편의지원 내용 및 제공의 구체적 필요성<br>ex) 상기인은 지체장애 정도가 심한 자(구 O급)로서 필기작업에 주로 사용하는 오른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어 필기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으며, 특히 미세한 글씨쓰기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 |
| | 하지 | · 휠체어 전용책상(휠체어 사용자) |
| 뇌병변장애 | | · 면접위원과의 거리 1.5m 내외로 가깝게 조정<br>· 면접과제 작성시간 1.2배 연장(의사진단서 필요)<br>※ **의사진단서 필수 기재사항**<br>① 뇌병변장애로 인한 필기능력 장애의 정도<br>* 상이등급자의 경우 의사진단서에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기재<br>* 뇌병변장애인으로서 장애등록 시 지체장애로 기재된 자 동일<br>② 신청한 편의지원 내용 및 제공의 구체적 필요성<br>ex) 상기인은 뇌병변 장애 정도가 심한 자(구 O급)로서 상지의 수의적 근육 조절 능력이 현저히 손상되어 필기 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 |
| 시각장애 | | · 관련서식 확대 제공<br>· 면접과제 작성시간 1.2배 연장(의사진단서 필요)<br>※ **의사진단서 필수 기재사항**<br>① 두 눈의 교정시력(좌, 우 각각 명시)<br>② 신청한 편의지원 내용 및 제공의 구체적 필요성<br>ex) 상기인은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0.1, 우0.2에 해당하는 자로서, 시각장애로 인해 문제판독이나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 |
| 청각장애 | | · 면접위원과의 거리 1.5m 내외로 가깝게 조정 |
| 기타 | | · 장애유형과 정도, 편의제공의 필요성과 응시자 간 형평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 |